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7. 11. 10.(금) 총 5매	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유인, 사무관 김대성, 주무관 박준식 • ☎ (044) 201-4017, 4022
보 도 일 시		2017년 11월 11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0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3.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

###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...콜밴 신고운임제·부당요금 처벌 강화

- 앞으로 3.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,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.
-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,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「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」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.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,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,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'화물' 표기가 의무화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(11. 13.~12. 26., 40일간)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<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>

- (난폭운전 차단) 난폭운전\*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,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·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\*토록 하였다.

\*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, 2차: 위반차량 감차조치

- (사고유발 처벌강화) 중대한 교통사고\*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.

\* 뺑소니, 피해자 유기, 신호 및 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,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

### <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>

위반사항	현행	개선	
사망자	• 10명 이상	감차 조치(2대)	감차 조치(보유차량의 1/5)
	• 5명~9명	감차 조치(1대)	감차 조치(보유차량의 1/10)
	• 3명~4명	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	위반차량 운행정지(90일)
	• 2명 이하	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	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
중상자	• 10명 이상	감차 조치(1대)	감차 조치(3대)
	• 5명~9명	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	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
	• 3명~4명	위반차량 운행정지(15일)	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	• 2명 이하	위반차량 운행정지(5일)	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
### <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운전자 행정처분 기준 >

위반사항	현행	개선
• 사망자 2명 이상	자격정지(60일)	자격 취소
•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	자격정지(50일)	자격정지(60일)
•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	자격정지(40일)	자격정지(50일)

\* 중상: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
- (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) '14~'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%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,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, 영상표시장치 시청·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(50만 원)를 부과하도록 하였다.

- (안전교육 강화)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'업체' 기준에서 '운전자 수' 기준\*으로 강화하였으며,

\* (예시)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

- (현행) 과징금 30만 원(30만 원×1개 업체) 부과 → (개정) 300만 원(30만 원×10명) 부과

-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,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·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·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.

- (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)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\*하였다.

\* (현행) 1차/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/15일 또는 과징금 10~20만 원

⇒ (개선) 1차/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/30일, 3차: 위반차량 감차조치

## < 콜벤 · 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 >

- (콜벤 신고운임제 도입)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벤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.

- (부당요금 처벌강화) 콜벤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수취하거나,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.

\* 현행: (부당요금) 1차/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10/30일, 3차: 감차조치

(환급거부) 1차/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30/60일, 3차: 감차조치

⇒ 개선: (부당요금) 1차: 운행정지 30일, 2차: 감차조치

(환급거부) 1차: 운행정지 60일, 2차: 감차조치

- (콜밴 '화물' 외국어 표시) 콜밴을 택시(외관이 유사)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(영어·중국어·일어)로 '화물'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.
- (무단전인 처벌강화)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전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\*을 강화하였다.

\* (현행) 1차/2차/3차: 사업전부정지 10일/20일/30일

⇒ (개선) 1차/2차/3차: 사업전부정지 20일/40일/60일

## < 기타 개선사항 >

- (직접·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)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·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%인자와 1%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하여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

\* (직접운송)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(1단계 50%, 2단계 100%) 이상을 직접 운송 (최소운송)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%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

< 직접·최소운송 의무 위반행위 시 처분기준안 >

현행			개선		
1차	2차	3차	1차	2차	3차
사업전부정지 30일	60일	<u>허기취소</u>	사업전부정지 (30일 × 미달성도)	사업전부정지 (60일 × 미달성도)	감차조치 (보유대수 × 미달성도)

- (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)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\* 대상자\*\*이나,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(별점 없음)는 제외되어

있어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 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다.

\* 사업용 화물·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로서, 속도 예측, 거리지각, 상황인식, 야간시력 등 다양한 검사 시행

\*\* 현재 ①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, ②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만 해당

○ (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)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\* 경우, 운송사업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,

\* 현재, 차고지는 운송사업허가 관할 시·도와 인접한 시·도에 설치 가능

-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(송부)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.

□ 이번 입법 예고되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/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
(전화 : 044-201-4017, 4022, 팩스 044-201-5601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(☎ 044-201-40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